

의안번호	제 262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4월 10일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
----------	-----

발의연월일 : 2023년 4월 10일

발의자 :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안 제5조)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안 제6조)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지원(안 제9조)
-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안 제10조)
- 포상 등(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4.
- 협의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각각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농어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7.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영어활동 곤란시 영농도우미 지원
3. 고령·취약여성농가 행복나눔이 지원
4.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3. 농어업·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4.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모성권 보장·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귀농어·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어·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
3. 귀농어·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어·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심의회) ①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등
-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 고충상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등
- 농촌지역의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3. 관련조문

- 안 제4조(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6조(심의회)
- 안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 안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 안 제9조(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 안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 안 제13조(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 안 제14조(포상 등)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803.1억원(국비 189.4, 도비 203.9, 시군비 409.8)
 - 안 제4조(계획 수립 등) : 자체 추진으로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실태조사) : 자체 추진으로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심의회)
 - ※ (신규) 심사수당지급 : 7.5백만원(5년)
 - * 산출기초 : 위원회 운영 수당 100천원×15명×1회=1,500천원
 - 안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 ※ 6건, 10,331백만원(기존 10,331백만원)
 - 안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 ※ 1건, 30,600백만원(기존 30,600백만원)
 - 안 제9조(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 ※ 1건, 1,000백만원(기존 1,000백만원)
 - * 산출기초 : 검진비 200천원×1,000명×1년=200,000천원
 - 안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 6건, 374백만원(기존 374백만원)
 - 안 제12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 ※ 1건, 778백만원(기존 778백만원)
 - 안 제13조(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 ※ 13건, 37,224백만원(기존 37,224백만원)
 - 안 제14조(포상 등) : 포상금 미지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155,500	155,500	155,500	155,500	155,500	777,500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국비)	155,500	155,500	155,500	155,500	155,500	777,500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의 정착지원		7,444,820	7,444,820	7,444,820	7,444,820	7,444,820	37,224,100
	귀농귀촌 유지지원(국비)	2,796,000	2,796,000	2,796,000	2,796,000	2,796,000	13,980,000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융화교육 지원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귀농귀촌인 홍보물 제작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수도권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충청북도귀농귀촌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가족센터운영(다문화교 류소통공간)(국비)	213,000	213,000	213,000	213,000	213,000	1,065,000
	가족센터운영(다이음사업) (국비)	65,340	65,340	65,340	65,340	65,340	326,7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국비)	209,340	209,340	209,340	209,340	209,340	1,046,70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국비)	3,750,260	3,750,260	3,750,260	3,750,260	3,750,260	18,751,300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	317,880	317,880	317,880	317,880	317,880	1,589,400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어린이집 다문화영유아 등 취약보육지원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포상 등 ⇨ 포상금 없음							
재원 조달		16,071,576	16,049,576	16,071,576	16,049,576	16,071,576	80,313,880
국비	기존사업	3,787,671	3,787,671	3,787,671	3,787,671	3,787,671	18,938,355
	계	4,087,358	4,065,358	4,087,358	4,065,358	4,087,358	20,392,790
도비	기존사업	4,085,858	4,063,858	4,085,858	4,063,858	4,085,858	20,385,290
	신규사업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계	8,196,547	8,196,547	8,196,547	8,196,547	8,196,547	40,982,735
시군비	기존사업	8,196,547	8,196,547	8,196,547	8,196,547	8,196,547	40,982,735
	신규사업	-	-	-	-	-	-